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목적

○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신체등급 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

○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에 대한 민원상담 및 불만청취로 만족도 향상

□ 운영 근거

○ 병역법 제12조제2항

○ 병역판정검사규정 제4장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

○ 구성

- 위원장 : 병역판정관
- 위원 :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 간사 : 병역판정보좌관

○ 외부위원 위촉

- 외부위원은 의료분야 전문가(의사, 간호사, 병리사 등)나 지방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신체등급 판정이나 병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 위촉
- 해촉 사유

1. 제척·기피·회피 의무 등 청렴 윤리의무를 위반한 때
2.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 심의대상

○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급 4급부터 6급 판정 대상자, 다만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역종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와 18세 모집병 지원자 및 학력,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이 질병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3. 너스바 등 질병·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은 판정보류 대상자
4. 병역판정검사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6급 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인근청 본인선택자 중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동일한 검사반인 경우
   나. 신장·체중으로 신체등급이 판정된 경우
   다.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경우
5. 제21조제4항에 따른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
6.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여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된 사람. 다만,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

1.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아, 수형자 등 자질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3.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보충역 또는 질병치유 전시근로역으로서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4. 질병 · 장애정도가 명확하여 병무청장이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사람(부록 19), 다만, 병역사항 등으로 보아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에 회부
5. 병역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다만,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장애등록을 한 후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 ·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
6. 제3항5호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무청 정밀심리검사나 의료기관 위탁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판정한 경우
   나. 병무용 진단서 및 치료기록 등을 참조하여 판정한 경우
   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다른과 사유로 4~6급 판정 받은 경우
7. 질병의 발병 · 악화가 명백하여 병역면탈의 의심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추가로 선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 등 질병의 발병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나. 질병의 악화로 수술이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한 사람
   다. 외부 위탁검사로 질병 상태가 확인된 사람

□ 심의서 작성

중앙신검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 발병일자, 원인, 증상 및 소견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회부

□ 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신검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처분보류. 이 경우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가능

1. 위원장은 오전과 오후 수검자로 구분하여 신체검사 종료 후 위원회를 소집하되,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심하여 신체검사 종료 시까지 대기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종료 전에 개별적으로 심의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병역처분(변경)·처분보류 등을 결정하며, 간사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후 심의서를 출력하여 심의대상자의 학력, 병역사항, 부모직업 등 심의에 참고할 사항을 설명하고, 별지 제48호서식의 신체등급 판정 심의자 명부를 기록·관리
3.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심의대상자 개인별로 질병·심신장애에 대한 증상 및 검사소견을 전 위원에게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 다만, 제64조제3항제5호의 경우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 임상심리사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검사소견 등을 설명.
4. 각 위원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설명과 수검자의 병역사항 확인, 고의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의문사항을 확인한 뒤 심의서의 심의 의견란에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평가한 신체등급에 대하여 가부 등을 표시하고 서명
5.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심의하거나 심의대상자 가족 등에게 심의과정을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6. 지방청 위원회는 심의에서 병역의무자가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을 결정하고,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보류“로 결정

○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

□ **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판정을 포함한 병역판정검사 모든 과정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불평·불만사항 등을 청취·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병역판정 옴부즈맨으로 임명

○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대상자,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접견이 용이한 장소에 병역판정 옴부즈맨의 자리를 마련하고 불평·불만사항의 접수·처리 등에 관하여는 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병역판정 옴부즈맨이 민원상담 및 참관과정에서 불평·불만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을 청취한 때에는 민원상담관 또는 병역판정보좌관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관에게 시정, 개선 또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의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 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관리

○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 옴부즈맨에게 통보. 다만,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